

행정 절차 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령안

1. 개정이유

위반사실 등 공표 전 당사자 보호 절차 마련, 복수 청문주재자 제도 도입, 처분시 문서열람청구권 부여 등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, 온라인공청회 단독 개최가 가능토록 하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「행정절차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, 복수 청문주재자 제도의 청문조서 및 청문의견서 서식, 위반사실 등 공표 전 당사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위한 서식, 처분시 문서열람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서식, 온라인공청회 단독개최통지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위반사실 등 공표 관련 서식 마련(규칙 제8조·제10조, 별지제8호의3·11호)

- 1) 행정청이 위반사실 등 공표 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할 수 있도록 서식 신설
- 2) 당사자가 행정청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의견제출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

나. 복수 청문주재자 제도 관련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서식 신설
(규칙 제11호, 별지 제18호의 2·5호)

다. 처분시 당사자 등이 행정청에 문서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문서열람 신청서 서식 개정(별지 제19호)

라. 온라인공청회 단독 개최통지서식 신설(규칙 제12조, 별지제22호)

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별지 제9호서식”을 “별지 제8호의2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위반사실 등 공표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의한다.

제8조의2 중 “별지 제9호의2서식”을 “별지 제9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법 제27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3항”을 “법 제27조제1항, 법 제31조제3항 또는 법 제40조의3제4항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15조의2에 따라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하는 청문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다.

제11조제6항 중 “별지 제18호의2서식”을 “별지 제18호의3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별지 제18호의3서식”을 “별지 제18호의4서식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15조의2의에 따라 청문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하는 청문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에 의한다.

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

이 신설한다.

②법 제38조의2제2항 및 영 제20조의2에 따라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개최의 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.
제13조제2항 중 “별지 제22호서식”을 “별지 제23호서식”으로 한다.
제14조 중 “별지 제23호서식”을 “별지 제24호서식”으로 한다.

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.

별지 제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11호서식 제1항 중 “예정된 처분”을 “예정된 처분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”을 “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, 제31조제3항 또는 제40조의3 제4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18호의3서식 및 별지 제18호의4서식으로 하고, 별지 제1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8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19호서식 제1항 중 “청문”을 “처분 또는 청문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하고, 별지 제23호서식(중전의 별지 제22호서식) 제4항 중 “정하되,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”을 “정하되 기간은”으로, “함”을 “한

다.”로 하며, 같은 항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.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행 정 기 관 명

수신자

(경유)

제 목 처분사전통지서(의견제출통지)

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예정된 처분의 제목							
당사자	성명(명칭)						
	주 소		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	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						
의견제출	제출처	기관명		부서명		담당자	
		주 소				전화번호	
		전자우편 주소				팩스번호	
	제출기한		년 월 일까지				

<의견제출시 유의사항>

-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·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,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.
-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발 신 명 의

작 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

팩스번호()

/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행 정 기 관 명

수신자
(경유)
제 목 처분사전통지서(위반사실등의 공표통지)

「행정절차법」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위반사실등의 공표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예정된 공표의 제목							
당사자	성명(명칭)						
	주 소						
공표의 원인이 되는 사실							
공표하고자 하는 내용		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						
의견제출	제출처	기관명		부서명		담당자	
		주소				전화번호	
		전자우편 주소				팩스번호	
	제출기한		년 월 일까지				

<의견제출시 유의사항>

- 1.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·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,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2.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3.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.
- 4.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발 신 명 의



기안자	직위(직급)	서명	검토자	직위(직급)	서명	결재권자	직위(직급)	서명
협조자								
시행	처리과-일련번호(시행)		접수	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)				
우	주소		/ 홈페이지 주소					
전화번호()		팩스번호()		/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		/ 공개구분		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								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 또는 위반사실등의 공표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 주소 (전화번호: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, 제31조제3항 또는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청 문 조 서(청문 주재자가 2명 이상인 경우)

제 목				
대 표 주재자	소 속			
	성 명			
청문 주재자	소 속			
	성 명			
	소 속			
	성 명			
	소 속			
	성 명			
당사자등 (대표자, 대리인)	성명(명칭)	주 소	출석 여부	불출석한 경우의 사유
참석한 행정청의 직원	직위			
	성명			
청문의 일시 및 장소				
청문공개	공개 여부			
	이유			
당사자등의 진술내용	요지			
	제출된 증거			
증거조사	요지			
	증거			
기타				
년 월 일				
대표 주재자 성명 : (서명 또는 인) 청문 주재자 성명 : (서명 또는 인) 청문 주재자 성명 : (서명 또는 인) 청문 주재자 성명 : (서명 또는 인)				
열람·확인자 성명 : (서명 또는 인)				
※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				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청문 주재자 의견서(청문 주재자가 2명 이상인 경우)

청문의 제목
처분의 내용·주요사실 또는 증거
종합의견(처분수준의 적정성, 경감필요성 등)
의견 불일치 내용 (불일치 의견을 제시한 청문주재자의 성명을 포함하여 기재)
기 타
년 월 일 대표 주재자 성명 : 청문 주재자 성명 : 청문 주재자 성명 : 청문 주재자 성명 : (서명 또는 인) (서명 또는 인) (서명 또는 인) (서명 또는 인)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행 정 기 관 명

수신자

(경유)

제 목 공청회 개최 통지서(온라인공청회 단독개최)

「행정절차법」 제38조의2제2항 및 영제20조의2에 따라 온라인공청회의 단독 개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.

제 목							
당사자	성명(명칭)						
	주 소						
실시기간 및 온라인공청회주소							
주요 내용							
발표자의 자격							
발표 신청	발표방법						
	신청기한						
	신청처	기관명		부서명		전화번호	
		주소					
참여 방법							
기 타							

끝.

발 신 명 의

적 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

팩스번호()

/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○○기관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

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○○기관이 ○○년도 중 실시한 행정예고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- 1. 제 목 : ○○ 년도 ○○기관 행정예고 실시현황
- 2. 행정예고 실시현황 통계

(단위 : 건)

① 총 건수	② 예고 대상				③ 예고 매체 (중복 표기)				④ 예고 기간	
	고시	훈령	예규	기타	관보· 공보	인터넷	신문 방송	기타	20일 이상	20일 미만

<작성 방법>

- ① 총 건수는 ○○년도 중 실시한 행정예고 전체 건수임
- ② 예고대상 : 고시, 훈령, 예규, 기타로 분류하며, 전체 합계는 총 건수와 동일함.
 - 고시 :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형식
 - 훈령 :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·감독 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
 - 예규 : 행정사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한 것
 - 기타 : 그 밖에 다양한 형태의 정책, 제도, 계획 등을 말함

* 규정, 규칙, 내규 등은 명칭에 관계없이 내용을 고려하여 위 예고대상으로 분류
- ③ 예고매체 : 「행정절차법」 제42조(예고방법)를 준용하여 관보(공보), 인터넷, 신문·방송 등에 중복적으로 공고가 가능하므로 중복 표기된 숫자임
- ④ 예고기간 :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제3항에 따라 행정예고 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하되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.

20

행정기관의 장

비고: 이 공고서식은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것임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 (재활용품)]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, 제11조제8항, 별지 제11호, 별지 제19호는 개정 행정절차법(제18748호, 22.1.11) 시행 이후 사전통지가 이루어지는 처분에 한하여 적용한다.

제2조(서식에 관한 경과조치)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라 이 규칙 시행전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11호, 별지 제19호의 개정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처분의 사전통지의 서식) ① (생략)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9 <u>호서식</u> 에 의한다. <u><신설></u>	제8조(처분의 사전통지의 서식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<u>별지 제8</u> <u>호의2서식</u> -----. ③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<u>위반사실 등 공표의 사전통지는</u> <u>별지 제8호의3서식에 의한다.</u>
제8조의2(공청회의 개최 요구 서 식) 당사자등이 법 제22조제2항 제3호 및 영 제13조의3에 따라 행정청에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 하려는 경우에는 <u>별지 제9호의2</u> <u>서식의 공청회 개최 요구서를</u> 제출해야 한다.	제8조의2(공청회의 개최 요구 서 식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별지 제9호서식</u> ----- -----.
제10조(의견제출관련서식) ① <u>법</u> <u>제27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3항</u> 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은 별 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. ②·③ (생략)	제10조(의견제출관련서식) ① <u>법</u> <u>제27조제1항, 법 제31조제3항</u> <u>또는 법 40조의3제4항</u> 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청문 관련 서식) ① ~ ④ (생략) ⑤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청문조서는 <u>별지 제18호서식</u> 에 의한다. < <u>단서 신설</u> >	제11조(청문 관련 서식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----- ----- ----- . 다만,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15조의2에 따라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하

⑥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는 별지 제18호의2 서식에 의한다.

⑦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의한다. <단서 신설>

⑧ (생 략)

제12조(공청회개최의 통지) (생 략)
<신 설>

제13조(행정예고 통계의 공고) ①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 통계의 공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을 참고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다.

제14조(행정지도의 서면교부)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

는 청문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다.

⑥-----

----- 별지 제18호의3서식-----.

⑦-----
----- 별지 제18호의4서식----- . 다만,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15조의2에 따라 청문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하는 청문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에 의한다.

⑧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공청회개최의 통지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②법 제38조의2제2항 및 영 제20조의2에 따라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의 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.

제13조(행정예고 통계의 공고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별지 제23호서식-----
-----.

제14조(행정지도의 서면교부) --

정지도서면의 교부는 별지 제23
호서식에 의한다.

----- 별지 제24
호서식-----.